

**기준일 설정 공고**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30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09월 15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3, 11층  
신라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상 원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에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